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은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58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17.

발 의 자: 강은미·서영교·장혜영

송영길 • 배진교 • 용혜인

이은주 · 조오섭 · 심상정

류호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, 재학 중에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후에 소득 비례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, 대학원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.

대학원생은 학부생보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중에서 후자만 이용할 수 있어 재학 중에도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을 안고 있으며, 학비 마련으로 학업 정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.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능력 있는 학생이 가정환경으로 대학원 진학을 주저한다면 고등교육 기회 균등 및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긍정적이지 않음.

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통합

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조, 제8조, 제9조, 제12조, 제18조 및 제39조).

법률 제 호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"대학생"을 "학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대학생"을 "학생"으로 하며, "외국인 및 대학원생"을 "외국인"으로 한다.

제8조 중 "대학생"을 "학생"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대학생"을 "학생"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"대학생"을 "학생"으로 한다.

제18조제7항제1호의 "대학생"을 "학생"으로 한다.

제39조제6항 중 "대학생"을 "학생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,
1. "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"	1
이란 <u>대학생</u> 에게 학자금을 대	<u>학생</u>
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	
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	
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	
다.	.
2. ~ 3. (생 략)	2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 <u>대학생</u> "이란 고등교육기관	4. <u>학생</u>
에 재학(입학 또는 복학 예정	
인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있	
는 학생(<u>외국인 및 대학원생</u>	<u>외국인</u>
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	<u></u>
5. ~ 13. (생 략)	5. ~ 13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	제8조(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
대상)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	대상)
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교육	
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	
사장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	
출에 관한 협약(이하 "협약"이	
라 한다)을 체결한 고등교육기	
관의 <u>대학생</u> 으로 한다.	<u>학생</u>

제9조(자격 요건) ① 교육부장관	제9조(자격 요건) ①
이 <u>대학생</u> 에 대하여 취업 후 상	<u>학생</u>
환 학자금대출을 하고자 하는	
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	
가구 해당 여부, 학점, 성적 석	
차, 연령 및 개인신용평점 등의	
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후	
그에 따라 대출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대출 신청 및 추천) ① ~	제12조(대출 신청 및 추천) ① ~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요청을	3
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<u>대</u>	
<u>학생</u> 의 경제적 여건 및 성적	<u>학생</u>
등을 고려하여 추천할 수 있다.	
제18조(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)	제18조(대출원리금의 상환원칙)
① ~ ⑥ (생 략)	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1. <u>대학생</u>	1. <u>학생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⑧ ~ ⑨ (생 략)	⑧ ~ ⑨ (현행과 같음)
제39조(중복 지원의 방지) ① ~	제39조(중복 지원의 방지) ① ~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	6
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	
출 및 학자금 무상 지급을 받	

은 <u>대학생</u> 또는 학부모가 제2 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 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 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,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는 초과금액 반환(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)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다 ⑦ ~ ⑧ (생 략)

<u>학생</u>
⑦ ~ ⑧ (생 략)